

제2521호
2017. 06. 0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규 칙
 - 제684호: 서울특별시 중구자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제685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17
- 고 시
 - 제2017-44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24
- 공 고
 - 제2017-429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 제2017-435호: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3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84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11	851	25	104	23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47	21	104	231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6급 소계		231	171	3	20	37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사회복지		7	4			3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 1, 도시계획1)		17	17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3			3	
위생		0	0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68	275	9	31	53
행정		215	155	6	8	46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계		342	252	2	28	60
행정		190	139	2	5	44
세무		32	32			
사회복지		22	6			16
전산		7	7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0	0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96	111	6	13	66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사회복지		25	11			14
전산		2	1		1	
방호		7	6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운전		38	15	2	6	15
전기운영(전기)		4	4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6	7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총 계		1,211	851	25	104	231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일반직 계		1,203	847	21	104	231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의무		7			7	
6급 소계		230	171	3	20	36	6급 소계		231	171	3	20	37
행정		151	109	3	8	31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사회복지		7	4			3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녹지		3	3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5			5		간호		5			5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6,건축6,지적3,디자인1)		16	16				시설(토목6,건축6,지적3,디자인1,도시계획1)		17	17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3			3		보건진료		3			3	
위생		1	1				위생		0	0			
운전		3	3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현행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개		368	276	9	30	53	7급 소개		368	275	9	31	53
행정		215	155	6	8	46	행정		215	155	6	8	46
세무		21	21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4	4				전산		3	3			
속기		3		3			속기		3		3		
방호		6	6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녹지		3	3				녹지		3	3			
수의		1	1				수의		1	1			
보건		7	3		4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9			9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1	1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개		343	256	2	28	57	8급 소개		342	252	2	28	60
행정		190	139	2	5	44	행정		190	139	2	5	44
세무		32	32				세무		32	32			
사회복지		19	6			13	사회복지		22	6			16
전산		7	7				전산		7	7			
방호		2	2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녹지		5	5			
보건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간호		13			13	
환경		2	2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4	4				시설관리		0	0			
운전		6	6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사무운영(워드1)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과	직속 기관	동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과	직속 기관	동
9급 소계	196	122	6	13	55	9급 소계	196	111	6	13	66
행정	51	21	2		28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세무	9	9			
사회복지	14	11			3	사회복지	25	11			14
전산	2	1		1		전산	2	1		1	
방호	10	9	1			방호	7	6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녹지	2	2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운전	38	15	2	6	15
전기운영(전기)	5	5				전기운영(전기)	4	4			
기계운영(기계)	3	2			1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사무운영(워드)	16	7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6급 소계		230	171	3	20	36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3			3	
위생		1	1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68	276	9	30	53
행정		215	155	6	8	46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4	4			
숙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계		343	256	2	28	57
행정		190	139	2	5	44
세무		32	32			
사회복지		19	6			13
전산		7	7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4	4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9급 소계		196	122	6	13	55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방호		10	9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5	5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의무		7			7	
6급 소계		230	171	3	20	36	6급 소계		230	171	3	20	36
행정		151	109	3	8	31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5			5		간호		5			5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3			3		보건진료		3			3	
위생		1	1				위생		1	1			
운전		3	3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illegible]

현행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3)		3	1			2	사무운영(워드)		1	1			
9급 소계		196	122	6	13	55	9급 소계		196	122	6	13	55
행정		51	21	2		28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세무		9	9			
사회복지		14	11			3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전산		2	1		1	
방호		10	9	1			방호		10	9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녹지		2	2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5	5				전기운영(전기)		5	5			
기계운영(기계)		3	2			1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도시계획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직 정원 15명 증원

[감축] 경비 3, 시설관리 4, 운전 6, 사무운영 1, 사역 1

[증원] 사회복지 15

나. 감염병관리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 신설

[감축] 전기운영 9급 1명

[증원] 보건 7급 1명

다. 도시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 신설

[감축] 전산 7급 1명

[증원] 시설(도시계획) 6급 1명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85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장경제과) 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농·수·축산유통 및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
6.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1. 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및 계량기 검사에 관한 사항
13.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4.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6.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17. 중구상공회 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조상품관리에 관한 사항
19.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14.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5. 청년 취·창업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현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4.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과 소관세목의 소인 및 과오납금 총당환불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가로환경과) 가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점용허가 및 관리
2.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3.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용도폐지
4. 세외수입 현계 및 현연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중선 정비 업무
6.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7.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 전통시장 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1. 노점실명제에 관한 사항
12.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 및 관리
13.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및 관리
14. 육교현판 사용허가 및 관리
15.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제14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급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18. 한부모가정 초기상담, 신청접수
44.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5호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자료관 운영 및 보존문서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u> 7. ~ 9. (생략)	제10조(민원여권과) ----- -. 1. ~ 5. (현행과 같음) 6. <u>기록관</u> ----- - 7. ~ 9.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장경제과) 시장경제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u>시장의 지도 및 공장등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2. <u>중소기업 및 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3. <u>삭제</u> 4. <u>삭제</u> 5. <u>삭제</u> 6. <u>물가조사 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u> 7. <u>농 수 축산유통에 관한 사항</u> 8. <u>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u> 9. <u>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u> 10. <u>삭제</u>	제15조(시장경제과) 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공장등록에 관한 사항</u> 2. <u>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u> 3. <u>농·수·축산유통 및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u> 4. <u>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u> 5. <u>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u> 6. <u>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u> 7. <u>전통시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8. <u>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11.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2.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3. 전통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결정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1. 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및 계량기 검사에 관한 사항 13.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4.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6.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17. 중구상공회 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조상품관리에 관한 사항 19.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취업지원과) 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5조의2(취업지원과) -----. 1. ~ 12. (현행과 같음) 1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14.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5. 청년 취·창업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삭제 4.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과세표준액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6.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제16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현·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4.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과 소관세목의 소인 및 과오납금 충당환불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제21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제21조(여성가족과) -----. 1. ~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32조(가로환경과) 가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점용료 부과·징수(총괄)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보상에 관한 사항 4. 가로정비(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 5.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교통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가로환경과) 가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점용허가 및 관리 2.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3.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등)의 용도폐지 4. 세외수입 현계 및 현년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중선 정비 업무 6.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7.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 전통시장 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1. 노점실명제에 관한 사항 12.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 및 관리 13.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및 관리 14. 육교현판 사용허가 및 관리 15.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생략) 8.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9. ~ 22 .(생략)	제40조(의약과) ----- 1.~7.(현행과 같음) 8.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9. ~ 22. (현행과 같음)
제41조(동장의 직급) ①② (생략) 1.~ 13. (생략)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선정 및 관리 15.~ 17. (생략) 18. 모·부자가정 조사 및 관리 19. ~ 43. (생략) <신 설>	제41조(동장의 직급) ①② (현행과 같음) 1.~ 13. (현행과 같음) 14. 급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15.~ 17. (현행과 같음) 18. 한부모가정 초기상담, 신청접수 19. ~ 43.(현행과 같음) 44.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간 분장사무 합리적 재조정
- 나. 조직변동·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담당사무 명확화를 위한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간 업무이관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시장경제과 → 취업지원과
- 나. 조직변동에 따른 담당사무 명확화
 - 동 주민센터 분장사무 중「찾아가는 동주민센터」관련 조항 신설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항 신설
- 다. 행정수요 변화 및 부서기능의 연계성을 고려한 분장사무 정비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44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목 적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 업 명 : 동화동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

3. 위치 및 규모

- 동화동 다산로36길 구간(홈플러스~동화동주민센터) 점포 140개 점포
-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5.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7년 12월까지

6. 사업방법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

7. 소요예산 : 350,000천원(옥외광고정비기금)

-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1업소 당 2,5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
-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8. 추진내용

- 업소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구현 및 조화로운 간판배치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설치
- 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 점포주, 전문가 등으로「간판개선 주민위원회」구성·운영
-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
- 개선완료후 지속적 사후관리(불법간판 신고 등)

9.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총 수량	○ 간판수량 : 1업소 1간판 ※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 1.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 2.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
가로형 간 판	○ 표시형태 : 판류형 또는 입체형 ○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 ○ 표시규격 ▶ 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
돌 출 간 판	○ 설치위치 :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 ○ 표시규격 ▶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 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세로크기는 3.5m 이내
창문이용 광고물	○ 2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폭 20cm이하 ○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1층 자사광고에 한정, 면적 0.18m 이하 ○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 ○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 세로 폭 45cm, 길이 3m, 창문면적 1/4 이내
기 타 준수사항	○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 ○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 중구 조례 개정시 그 사항을 따른다.

9. 허가 및 신고

-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10. 광고물 등의 심의

-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11. 위치도면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3.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현장사진


다산로 36길 일대

공 고

이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429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종전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준용 등 일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안 제명)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위원회 설치관련 적용 법률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위원회 기능과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 등 규정 정비(안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 및 변경 등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토지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935, FAX:3396-8812, 메일:haera020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법 제17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5.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에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을 “위촉된”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표준주택가격)및 인근 지가(주택가격)”를 “(표준주택가격·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및 인근 지가(개별주택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각 업무를 관장하는 토지관리과장 또는 세무1과장”을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4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2조(기능)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1. 법 제2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법 제16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법 제17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법 제16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의견제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4.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5.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3조(구성) ①----- ----- 인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현행	개정안
①(생략)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현행과 같음) <삭제> ③위촉된 ----- -----.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및 인근 지가(주택가격)와의 균형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표준주택가격·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및 인근 지가(개별주택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각 업무를 관장하는 토지관리과장 또는 세무1과장이 된다. ② (생략)	제7조(간사) ①----- ----- 소관 업무 과장-----. ②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435호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7.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가. 부의 안건 : 예산안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구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	기획예산과(3396-4913)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3396-4556)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여권과(3396-4755)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3396-5013)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개발 구역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경제과(3396-5057)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세 무 1과(3396-5102)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무 1과(3396-5102)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무 1과(3396-5102)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무 2과(3396-5255)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치수과(3396-6175)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관리과(3396-6264)
동의안	중구 의료패션지원센터(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경제과(3396-5064)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건강도시과(3396-6302)
동의안	(가칭)구립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중림발달장애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3396-5366)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여성가족과(3396-5423)

나.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3396-4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